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 영 숙 의원)

의안 번호	23-130
----------	--------

발의년월일 : 2023. 10. .

발의자 : 권영숙, 고병준, 남해석, 안미자,
장정희, 한선미, 홍지광

1. 개정이유

장학금 신청·수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게 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과 관련 있는 조항들의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의 지급대상(안 제3조)

-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새마을 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제3조제1항제3호의 특기장학생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나. 추천(안 제4조)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회장”으로 조문 내 용어를 수정함.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8. 17. ~ 8.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사업에 봉사활동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내 인”을 “마포구 새마을 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 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기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도가 주최하는 기능, 체육, 예능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제4조 중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새마을문
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이 공동으
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배수 이내로 추천
한다.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마포구 새마을 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 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 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최영국
연 락 처	02-3153-8313